

교육과정개발위원회규정

제정 2025.12.1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과(부) 교육과정의 효율적 개발과 개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과(부) 학과장이 임명하는 학과 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 중 1인 이상 2인 이내는 산업체 인사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기준에 관한 사항
2. 교과목 신설 ·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학년별 전공교과목 구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4. 산업체 · 학생 등의 요구 반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관련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이 확인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6조(결과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교육과정(안)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제출하고,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